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63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8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는 “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관련 법에 따르면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보충역,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역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포함될 수 있음. 따라서,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한 사람 역시 해당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’을 ‘제대군인의 복무기간’으로 수정함 (안 제 10조)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0조 중 “군 복무기간”을 “복무기간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<u>군 복무기간</u>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무기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10조 · 제11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0조 · 제11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